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97 발의연월일: 2025. 2. 17.

발 의 자:정일영·정동영·박지혜

이재관 · 김남근 · 황정아

장종태·최민희·김 유

손명수 • 전진숙 • 조인철

백승아 · 문금주 의원

(14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이러한 결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,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,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.

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,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

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29조제1항제3호,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제1항제3호 중 "전기통신을"을 "전기통신 또는 우편을"로 한다. 제40조제1항제2호 중 "전기통신을"을 "전기통신 또는 우편을"로 한다. 제55조의2제1항제3호 중 "전기통신을"을 "전기통신 또는 우편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9조(임시조치) ① 판사는 가정	제29조(임시조치) ①		
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·심리			
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			
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			
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		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		
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.			
1. ·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		
3.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	3		
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			
조제1호의 <u>전기통신을</u> 이용한	<u>전기통신 또는 우</u>		
접근 금지	<u>편을</u>		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		
	② ~ ①		
제40조(보호처분의 결정 등) ①	제40조(보호처분의 결정 등) ①		
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			
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		
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			
할 수 있다.	<u>.</u>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	2		
는 가정구성원에게 「전기통			

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<u>전</u> <u>기통신을</u>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

- 3. ~ 8. (생략)
- ② ~ ⑥ (생 략)
- 제55조의2(피해자보호명령 등) ① 저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,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수있다.
 - 1. · 2. (생략)
 - 3.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 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
 - 4. 5. (생략)
 - ② ~ ⑥ (생 략)

<u>전</u>
기통신 또는 우편을
3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세55조의2(피해자보호명령 등) ①
1.•2. (현행과 같음)
3
<u>전기통신 또는 우</u>
편을
4.•5. (현행과 같음)
⑦ ~ ⑥ (혀해과 간으)